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-451호

2025년도 수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고도화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

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9조(예고 및 공모 등) 및 「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」 제8조(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)에 따라, "수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고도화 사업"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> 2025년 0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

1.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이 어촌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과 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수산업 요소 기술 고도화 및 자동화 추진

□ 사업내용

| 내역사업명 | 사업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산업 현장 보급형 장비 고도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| 특정시기별 노동력이 집중되는 수산업의 품목별 기계화·자동화 |
| 기술개발 | 촉진을 통해 수산업 현장의 현안 해결 및 현장 보급 |

□ 공모과제

○ **(선정방식)**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

| 연구개발과제명 | 전체 연구개발기간 (당해 연구개발기간) |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(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멍게껍질 대량 분리 및 가식부(육질) 포장 장비 개발 | 3년 이내 (9개월 이내) | 12억원이내 (2억원) | 지정공모 |

-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최대 9개월만 진행
- 연구개발기간,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, 평가결과, 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세부사항은 [붙임 2] 과제제안요구서(RFP) 참조

2. 신청자격 및 추진체계

□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

<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~2. (생략)

- 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 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 - 나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 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-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 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 - 바.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 - 사.「상법」제169조에 따른 회사
 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
- 4.~9. (생략)

<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>

- 제2조(연구개발기관) ①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아 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・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・단체를 말한다.
 -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- 2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 - 3.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(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② (생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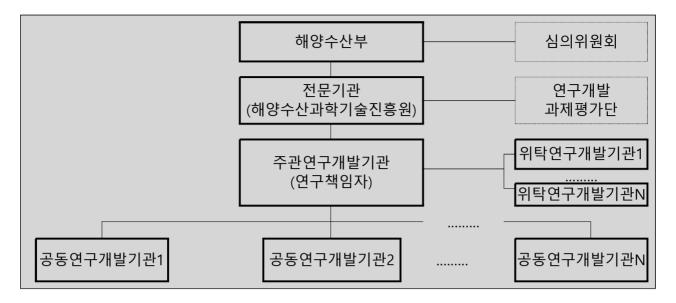
<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>

-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·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양성사업(이하 "연구개발사업등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- 1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3. 「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
- 4. 국립ㆍ공립 연구기관
- 5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
- 6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
- 7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기관 또는 단체
- 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

<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6조>

-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2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- 3.「연구산업진흥법」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
- 4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
- 5.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
- 6.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

□ 추진체계



3. 신청방법 및 절차

□ 공고 및 접수기간

- 공고기간: 2025. 2. 28.(금)~2025. 3. 7.(금) (8일)
- 접수기간: 2025. 2. 28.(금)~2025. 3. 7.(금) 16:00 까지 (8일)

□ 신청방법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https://www.iris.go.kr)내 R&D 업무 포털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선택하여 신청 접수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서 제공하는 **과제 접수 등 사용자** 매뉴얼([붙임5])을 참고하여 연구개발과제 신청 요망
 - *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https://www.iris.go.kr) 로그인 → R&D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→ R&D 고객센터 → IRIS 사용 매뉴얼 → [IRIS R&D 통합업무포털-연구자용]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
- 마감시한까지 [정보입력], [저장], [최종확인] 완료 후 [제출]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접수되며, 마감시한 초과 시 무효처리함
 - * 접수 마감시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능하므로, 반드시 이전에 신청 서류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하며, 마감일 16:00까지 전산 미접수 시 무효처리함

- 과제신청 시, 과제정보입력, 연구자/연구기관 등록,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업로드 등의 소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접수 요망
 - *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의 증가로 인하여 R&D통합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~3일전에 접수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함
- 시스템입력 오류 등 각종 문의사항은 IRIS 콜센터(042-862-1500 / 1877-2041, 09:00~18:00)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※ 사전 준비사항(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)

-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사업 공고문 확인 및 첨부자료 다운로드
- 각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와 연구책임자 그리고 참여연구자 모두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IRIS 회원가입 정보 업데이트 필요(iris.go.kr)
- * 국가연구자번호가 없는 경우: IRIS 회원가입 후 발급
- * 국가연구자번호가 있는 경우: IRIS 로그인 후 '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(NRI)'을 클릭해 국가 연구자번호 전환
- * 신청기관 대표자의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제 신청 및 접수 불가

※ 신청 후 확인 사항

- [신청내역 조회/수정]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'신청/접수여부'가 '제출완료'로 표시 되는지 확인
-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오류가 없는지 확인
- * 등록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이 훼손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
□ 제출서류(서식과 별첨서류로 구분)

| No | 신청 서류 | 비고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신청 공문(주관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필수) 1부 | - |
| 2 | 연구개발계획서(서식 1) 1부 * 첨부서류: 진도점검 목표,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, 연구 데이터 제공 및 관리계획서 등 [별첨 1~8] 포함 작성(해당 시) | 서식 1, 별첨서류 1~8 |
| 3 |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(해당되는 경우) 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,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가능 ** 중소, 중견기업확인서를 신규 발급하여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, <u>가결산 재무제표</u> 및 <u>신고예정 재무제표 제출 관련 확약서를</u> 제출하고, 접수기간 종료 후 2주 내 중소, 중견기업확인서를 별도 제출한다면 확인서를 접수기간 내 제출한 것으로 본다. | - |
| 4 | 사업자 등록증(해당되는 경우) 1부 | - |
| 5 |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| 서식 2 |
| 6 |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 | 서식 3 |
| 7 | 과제제안요구서(RFP)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1부 | 서식 4 |
| 8 |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| 서식 5 |
| 9 |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 및 우대 관련 증빙서류 [*] 1부(해당되는 경우) * 우대관련 서류는 접수기간 내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 | 서식 6 |
| 10 | 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 | 서식 7 |
| 11 | 국세, 지방세, 4대보험 완납증명서, 최근 3개년(2021-2023) 재무제표* * (외부감사를 받는 기업) 외부감사보고서 (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) 법인세 조정신고의 서식으로 제출한 재무제표 | 영리기관에 한함 (공기업 제외) |

4. 선정기준 및 절차

□ 선정기준

- (근거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), 제14조(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(연구개발과제 및 연구 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) 및 제27조(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)
- 지정공모 평가점수는 평가항목(연구개발계획, 추진체계, 연구역량 및 성과 활용·사업화 전략 계획)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함

- 자유공모 평가점수는 평가항목(연구대상, 연구개발계획, 추진체계, 연구역량, 성과활용·사업화 전략계획)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함
- 연구개발기관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, 제출된 연구 개발계획서를 평가^{*} 및 필요 시 심의위원회^{**}를 실시하고 사업담당관은 이를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확정함
 - *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는 연구책임자의 대면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평가상황에 따라 서면·화상 등을 활용한 평가 가능
 - **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의견, 결과 및 개발품목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과제의 지원우선순위·범위·규모, 사업추진체계, 사업기간 등을 심의, 평가단의 평가결과 심의·확정
-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하며,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,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가산하지 아니함
 - * 종합평가점수는 선정평가 위원별 점수(100점 만점)를 산술평균(평가위원이 7명 이상인 경우 최고점 및 최저점 각 1개를 제외)한 점수이며, 최종종합평가점수는 종합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반영한 점수임

□ 상세 평가항목 및 내용

- 지정공모(상용화 R&D)
- 멍게껍질 대량 분리 및 가식부(육질) 포장 장비 개발 과제

| 평가항목 | 평가내용 | 배점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|
| | • 연구개발의 목적 및 RFP 요구사항이 연구개발계획서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가? | 10 |
| 연구개발 계획 | •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(연구동향/시장현황/정책동향/선행연구 와의 차별화 등)는 충실하며, 연구개발계획에 반영되었는가? | 5 |
| (35%) | • 연구개발 목표/내용/방법 등 연구개발계획은 구체적이며 창의적인가? | 10 |
| | • 최종목표 및 연차(단계)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정량적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설정은 적절한가? | 10 |
| 추진체계 (20%) | • 추진체계는 연구개발 추진전략, 연구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 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? | 10 |
| | •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및 연구성과의 연계 방안은 명확하고, 적절한가? | 10 |
| 연구역량 | • 연구책임자 또는 소속기관·단체의 연구역량 및 관리방안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? | 15 |
| (25%) | •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? | 10 |
| 성과활용· 사업화 | •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? | 10 |
| 전략 계획 (20%) | • 사업화 전략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있는가? | 10 |
| | 합계 | 100 |

재공고 기준

- 1.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
- 2.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
- 3.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5.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- □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여부
 -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참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 - 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「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법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
- □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여부
 -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| 구분 | 참여제한 대상 | 조치내역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연구개발기관 | 주관, 공동연구개발기관 | 탈락 | | |
| | 위탁연구개발기관 |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 탈락 | | |
| OI 7 #10171 | 주관연구개발기관 | 탈락 | | |
| 연구책임자 | 공동, 위탁연구개발기관 |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 탈락 | | |

- □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에 따라,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. 다만,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
 -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/참여연구자 구분 기준

| 구분 | 책임자 | 책임자 외 연구자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주관연구개발기관 | 연구책임자 | 참여연구자 |
| 공동연구개발기관 | 참여연구자 | 급 여 친구시 |

※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외

<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>

-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 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.
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(연구개발 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)과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, 그 중 연구 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.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
 - 1.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 - 2. 사전 조사, 기획・평가연구 또는 시험・검사・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 - 3.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 - 4.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, 제5조제1호·제2호의 사업,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 - 4의2.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 - 5.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
산정할 수 있다.

- 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
 - 가.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
 - 나.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- 7.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
- □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 초과 제한
 -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총합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
 - *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30% 이내에서 계상이 가능하나, 실제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(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)
- □ 연구개발기관(영리기관)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단, 비영리기관, 공기업(공사), 지방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않음)
 -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
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- 최근 결산 기준(2021~2023) 자본전액잠식인 경우(창업 3년 미만 기업 제외)
 - * 자본전액잠식 검토를 위해 요청한 자료를 보완하지 않을 시,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 관리지침 제12조제4항에 따라 탈락 처리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에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경우

6.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납부

- □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 기준(세부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[별표1] 참조)
 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통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적용

<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> [별표 1]

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(제19조제3항 관련)

1.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 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.

| 구분 | 지원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|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|
| 나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|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|
| 다.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|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|

2.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.

| 구분 | 지원기준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|
| 다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|
| 라.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|

- 3.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가.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
 - 나. 연구시설 · 장비비
 - 다.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
 - 라. 소프트웨어 활용비
- 4.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 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.
- 비고 1.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수 있다. 다만, 사회·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.
 - 2. 제2호에서 "평균매출액등"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.
- □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납부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17조(연구개발성과의 활용), 제18조(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)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(연구개발성과의 활용), 제38조(기술료의 납부), 제39조(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납부) 및 제40조(기술료 등의 감면) 등에 따름
 - 기술료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를 해양수산부에 납부해야함

| 구분 | 세부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) |
| 1. 기술료 납부 의무기관 정의 | <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>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2.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・지방공사・지방공단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|

2.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하는 경우

- 가. (제3자실시)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연구개발성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3항)
- 나. (직접실시)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하는 경우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2항)

| | 기업 구분 | 실시유형 | 정부납부기술료납부액 | 정부납부기술료상한액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소 | 제3자 | 기술료징수액 X 1,000분의 25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 X 1,000분의 100 |
| | | 직접 | 연구개발성과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 X 1,000분의 25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 X 1,000분의 100 |
| 3. 정부납부 | | 제3자 | 기술료징수액 X 1,000분의 50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 X 1,000분의 200 |
| 납부액 | | 직접 | 연구개발성과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 X 1,000분의 50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 X 1,000분의 200 |
| | | 제3자 | 기술료징수액 X 1,000분의 100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 X 1,000분의 400 |
| | 지방공단 및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| 직접 | 연구개발성과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 X 1,000분의 100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 X 1,000분의 400 |

<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및 제18조>

- 제17조(연구개발성과의 활용)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(이하 "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"이라 한다)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성과의 유지·관리·공동활용,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·연계, 연구 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-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(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·분석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할 수 있다.
 - ⑥ 제1항에 따른 조치, 제4항에 따른 지원, 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)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.
 - ② 「상법」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

-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- 1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2.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
- 3.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징수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-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.
- 1.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,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
- 2.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
-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,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, 제39조 및 제40조>

- 제38조(기술료의 납부)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 -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"「상법」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"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(이하 "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 -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.
 - 1.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 기술료 징수액에 1,000분의 25를 곱한 금액.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,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 - 2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 기술료 징수액에 1,000분의 50을 곱한 금액.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,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 - 3.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 기술료 징수액에 1,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.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,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-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제39조(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)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
 -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 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.
 - 1.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 연구개발성과로 인한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(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1,000분의 25를 곱한 금액. 다만,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,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 - 2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,000분의 50을 곱한 금액. 다만,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,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 - 3.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. 연구개발성과로 인한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,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. 다만,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,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 - 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2항제1호 단서, 같은 항 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.
 -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·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할 수 있다.
 - ⑥ 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.
 -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40조(기술료 등의 감면) ① 삭제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- 1.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
- 2.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
- 3.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회된 경우
- 4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7. 보안등급

| 신청자는 | 신청 과제의 |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| 분류하여 | 이를 | 연구개발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|
| 계획서에 | 표기하여야 형 | 하 | | | |

| 보안과제는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1조(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) 및 |
|---|
|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(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)에 따라 연구 |
| 개발성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·재산적 가치에 상당힌 |
|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|
|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|

<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>

제21조(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) ① (생략)
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・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.
- ③~⑤ (생략)
- ⑥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,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,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>

- 제45조(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(이하 "보안과제"라 한다)로 분류할 수 있다.
 - 1. 「방위사업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 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 - 가.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
 - 나,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
 - 다.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
 - 라.「대외무역법」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
 - 3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
 - ②~③ (생략)

8.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신규채용

- 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(주관/공동/위탁)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**5억 원당 1명**의 비율로 **만 18세 이상 34세 이하**의 참여연구원*(이하 "청년인력")을 신규 채용하고, **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**하여야 함
 - * 군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(최고 만 39세로 한정)
 -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청년인력도 인정하며, 대상기업은 1차년도 회계연도 종료 전에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함
- □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최종 협약('24. 4.) 시, 기관별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원 확정 예정

[적용 예시 1]구분연구개발기관1(기업)연구개발기관2(기업)합계정부지원금 총액7억원8억원15억원청년채용 의무3명(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)3명

[적용 예시 2]

| 구분 | 연구개발기관1(기업) | 연구개발기관2(대학) | 합계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정부지원금 총액 | 7억원 | 8억원 | 15억원 |
| 청년채용 의무 | 1명 | (해당없음) | 1명 |

[적용 예시 3]

| 구분 | 주관연구개발기관(대학) | 위탁연구개발기관(기업) | 합계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
| 정부지원금 총액 | 9억원 | 6억원 | 15억원 |
| 청년채용 의무 | (해당없음) | 1명 | 1명 |

9.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계상 기준

- □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제65조(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) 및「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」별표 1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는 영리기관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
 - 중소·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(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)
 - 「연구산업진흥법」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

-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
- 지식서비스 분야^{*}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참여연구자
 - * "지식서비스 분야"는「산업발전법 시행령」제3조제1항 및 별표 2 업종 참조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청년의무채용 및 청년추가채용 참여연구자
- 그밖에 장관이 인건비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(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)

10.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

- 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장비의 지속적인 운영·활용을 위해 '연구 시설 장비비 통합 관리제' 도입('19)·운영 중이며, 해당기관을 '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'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
 - 지정된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신청·협약하는 과제는 통합 연구 시설·장비비(특례 연구시설·장비비)와 일반 연구시설·장비비를 모두 계상 가능
 - *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은 '통합 연구시설 장비비'를 계상할수 없음
 - '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 관리제' 운영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관리하고, 과제 수행기간과 무관하게 유지보수 가능
 - [붙임 5] 중 '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도 참고자료'의 연구시설· 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통합관리기관은 연구 시설·장비비 계상 가능

11. 유의사항

|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|
|--|
| 신청서류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,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* 사전검토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*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* 제출된 서류와 전산 입력서류가 상이하거나, 관련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|
| 마감시간까지 전산 접수가 완료되지 않거나 신청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으면 본 공모에 대한 신청은 무효 처리됨 |
| 1차년도에 3천만원 이상(세금, 운송비, 설치비 포함)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이 필요한 경우 [서식1-1]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의 '[별첨 2] 연구시설·장비 구축계획서'를 제출 *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이후,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(NFEC)의 심사를 통해 구입 가능 |
|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 시,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 |
| 추진체계에 기업이 있는 경우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별표1에 따라 해당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|
|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만 지정할 수 있음 |
| 신청자는 연구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,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과도한 참여는 지양 |
|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각 분야별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|

□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기관 역할(주관/ 공동/위탁)로만 참여할 수 있음

| 예시1 | 과제번호 2024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B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|
|-------|---|
| 에시 | 동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할 수 없음 |
| 예시2 | 과제번호 2024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|
| 에시스 |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|
| MILLO | 과제번호 2024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1과 |
| 예시3 | 공동연구개발기관2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|

- □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
- 1.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
- 2. 연구개발과제(연구업적 등)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
- 3.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
- 4.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
- □ 그밖에 협약에 포함되는 사항
-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연구개발성과의 등록·기탁, 연구개발정보의 수집·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
- 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확충·고도화 및 관리·활용에 관한 사항
-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및「산업안전보건법」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*
- * 협약 체결 시, 연구실 안전교육·훈련 이수확인서(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별지 제5호의 2서식)를 첨부서류로 제출
- □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을 따르되, 그 외 세부사항은 「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 및 「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」에 따라 처리됨
- □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향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

12. 문의처

| | 사업관련 | 전산(시 | 스템) 문의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분 | 구분 담당부서 전화 및 이메일 | | 부서 | 전화 |
| 케아스타티 | 수산정책과 | 044-200-5427 | | |
| 해양수산부 | 구인 3 취취 | 044-200-5428 | IRIS 콜센터 | 1877-2041 (09:00~18:00) |
|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| 블루푸드팀 | 02-3460-0326 yhi5968@kimst.re.kr | | , |

[붙임 1]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·감점의 기준 및 방법

[붙임 2] 과제제안요구서(RFP) 각 1부

[붙임 3] 별첨(붙임 3, 4) 자료 목록

[붙임 4]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및 별첨서류(1~8) 등 관련서식(별첨)

[붙임 5] 참고 자료(규정, IRIS 매뉴얼,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등)(별첨)

[붙임 1]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·감점의 기준 및 방법

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·감점의 기준 및 방법(제21조제5항 관련)

| 구 분 | 기 준 | 적용 기산일 | 적용 기간 | 점수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|----|
| | 1. 최종평가결과 "우수등급"(상대평가 시 상위 20%, 절대평가 시 만점의 80% 이상)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주관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|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| 2년 | 1점 |
| | 2. 우수 논문(임팩트팩터 15 이상)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한 경우 | 논문 게재일 | 3년 | 2점 |
| | 3.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 연구책임자가 과제종료 후,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| 연구개발 협약 종료일 | 3년 | 2점 |
| | 4. 과학기술분야의 훈장, 포장,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거나 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또는 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한 연구성과로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주관 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| 포상일 | 3년 | 2점 |
| 가점 부여 항목 | 5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제57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·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| | 유효 기간 내 | 1점 |
| | 6.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-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률 」제14조의6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가 소속된 기업 - 해양수산 예비오션스타기업 | 인증일 | 유효 기간 내 | 2점 |
| | 7.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에 중소기업이 참여한 경우 또는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경우 | <u>=</u> | 중소기 업유지 또는 승인후 재편완 료시까 지 | 1점 |

| 구 분 | 기 준 | 적용 기산일 | 적용 기간 | 점수 |
|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
| | 8.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,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한 경우 |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| 3년 | 2점 |
| | 9. 육성법 제17조,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·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해당 기술분야(해양수산 과학기술분류체계 대분류 기준)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| 신기술 인증일 | 유효 기간 내 | 2점 |
| | 10.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해양수산 R&D를 통해 구축된 연구장비를 전담기관 (NFEC)을 통해 1점 이상 무상으로 이전을 완료한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가점 1점을 매긴다. 다만, 동일 연구장비에 대한 가점은 신규연구개발과제 1건으로 제한한다. (적용기간 3년) | 이전 완료일 | 3년 | 1점 |
| 구분 | 기준 | 기준일 | | 점수 |
| 감점부여 | 1. 최근 3년 이내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기관·단체, 연구자가 참여한 경우 | | 수 마감 전일 2점 | |
| · · 항목 | 2.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포기 [*] 한 기관·단체, 연구자가 참여한 경우 * 협약해약일 기준 | 접수 마감 | 전일 | 2점 |
| 1. 가점 및 감점은 최대 5점 이내로 부여 2.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 3.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가감점은 조정할 수 있고, 이 경우 공고 시 포함 4.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경우 기업 참여 가점을 추가하거나 확대하는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고 시 포함 5. 가점부여항목 제6호,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, 해당 기업이 기관부담연구 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| | | | |

[※]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·감점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

[붙임 2] 과제제안요구서(RFP)

| 과제 | H | OF | Q | コ | 11 | ſRI | EDI |
|---------|-----|----|---|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
| I'I AII | ΛII | | | - | Λ II | | |

| 중앙행정기관명 | 해양수산부 | 사업명 | 수산업 현정 | 방 맞춤형 기술 고도화 사업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문기관명 |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| 내역사업명 수산업 현장 보급형 장비고도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기술개발 | | |
| 공모방식 | 지정공모 | 보안등급 | | 일반 |
| 연구개발과제명 | 멍게껍질 대량 분리 및 가식부(육질) 포장 장비 개발 | | | |
| 전체 연구개발기간 (당해연도) | '25. 4. ~ '27. 12. 이내 ('25. 4. ~ '25. 12.) | 총 정부지원((당해인 | | 12억 원 이내 ('25년 2억 원 이내) |
|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| 제한 없음 | 필수 참여기 | 관 유형 | 기업 참여 필수 |
| 연구개발단계 | 응용 |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여부 | | 징수 |
|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 | 수산양식 - 증양식 - 양식시설/자재 기술 (FSC-FSC01-FSC0105) 해양환경 - 증양식 -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생태계 관리기술 (MEV-FSC01-FSC0106) | | | |

1.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

- □ 멍게 수확 후 1차 처리 작업인 껍질 분리를 위해 100%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, 현재 어업인 노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
 - 통영, 거제에서 전국 멍게 생산량의 약 70% 이상을 차지하며, 이 지역에서는 멍게와 굴 양식이 병행되고 있음. 멍게의 수확시기는 2~6월로 굴 수확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인력 부족난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
- □ 또한, 고수온, 적조 등 발생 시 폐사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양식 중인 멍게를 한꺼번에 수확하여 껍질을 제거해야 하지만, 급격하게 많아진 양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해 상당량이 부산물로 폐기되고 있음
- □ 따라서 어업인과 수협에서는 신속하게 멍게 가식부(육질)를 분리할 수 있는 자동화 장비의 개발을 희망하고 있으며, 장비 보급이 실현되면 신선한 멍게 가식부(육질) 확보가 가능하여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2. 제안 요구 내용

1) 최종 목표

□ 멍게껍질 대량 분리 및 가식부(육질) 포장 장비 개발을 통해 노동력 감소 및 1일 가공량 증대

2) 최종 연구개발성과물

- □ 멍게껍질 및 가식부의 대량 분리 장치 개발
 - ㅇ 멍게 입출수공(항문 및 입) 절단부 설계ㆍ제작 1건
 - ㅇ 분리된 멍게 가식부 절개 장치 설계ㆍ제작 1건
 - ㅇ 멍게 몸통으로부터 멍게 가식부 분리장치 설계ㆍ제작 1건
- □ 멍게 가식부 내장 제거 및 세척 장치 개발
 - ㅇ 멍게 가식부 내장 제거 장치 설계ㆍ제작 1건
 - ㅇ 멍게 가식부 세척 살균장치 설계ㆍ제작 1건
- □ 멍게 가식부 포장 장치 개발
 - ㅇ 멍게 가식부 포장 장치* 설계ㆍ제작 1건
 - * 멍게 가식부 단위별(0.25~5kg)

3) 주요 성과지표

| 성과목표 | 성과지표 | 목표치 | 평가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명게 가식부(육질) 대량분리 가공장치 | 명게 가식부(육질) 분리 수율(무게 기준) | 수작업 대비 90% 이상 | 공인인증 ※ 측정방법 구체적 제시 필요 |
| 성능 | 멍게분리 속도 | 기존 수작업 대비 100% | 공인인증 ※ 측정방법 구체적 제시 필요 |
| 명게 가식부(육질) 내장분리 제거 및 | 내장 제거 성공률 | 90% 이상 | 공인인증 ※ 측정방법 구체적 제시 필요 |
| 세척장치 성능 | 가식부(육질) 세척량 | 4kg/min 이상 (분리장치 속도와 연계) | 공인인증 ※ 측정방법 구체적 제시 필요 |
| 명게 가식부(육질) 포장장치 성능 | 포장 속도 | 육질부(100g 포장 기준) 20개/min 이상 | 공인인증 ※ 측정방법 구체적 제시 필요 |
| 장비 보급 활성화 | 실증평가 | 2개소 이상 실증 평가 | 실증 보고서 |

| 성과목표 | 성과지표 | 목표치 | 평가기준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장비 설계도 및 매뉴얼 | 1식 | 설계도 및 매뉴얼 ※ 설비는 부식이 잘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설계 |
| 성능 개선 | 노동력 절감 | 50% 이상 | 기존 대비 노동력 효율성 제고 확인 ※ 측정방법 구체적 제시 필요 ※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협력, 생산량 결과 취합 등 고려 |
| | 리빙랩 운영 결과 | 각 연도별 보고서 1식 | - 리빙랩 운영 결과 - 활용성, 요구사항 반영 여부, 장비 |
| 리빙랩 운영 | 사용자 만족도 | 2차년도 75%(점), 3차년도 80%(점) | 성능 및 가격 등을 포함하는 만족도 조사 실시 ※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협력 |
| | SCIE논문 건수 | 2건 이상 | NTIS** 등록기준 **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|
| 해양수산 R&D 성과제고 | 1101 1 | 3건 이상 | NTIS 등록기준 |
| S대세포 | 사업화 [*] *판매 대수 또는 매출액 제시 | 2건 이상 | NTIS 등록기준 |

[※] 제시된 최종 연구개발성과물 및 성과지표는 최소 요구조건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연구개발기관이 추가/구체화 가능

4) 주요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

- □ 멍게 가식부(육질) 대량 분리 가공시스템 설계 및 제작
 - 멍게껍질 분리를 위한 정렬장치 설계 및 제작
 - 멍게 입출수공(항문 및 입) 설계·제작
 - 멍게 몸통으로부터 멍게 가식부(육질) 분리장치 설계·제작
 - 분리된 멍게 가식부(육질) 절개 장치 설계·제작
 - 멍게 가식부(육질) 대량 분리·가공 자동화 장비 소형화 기술개발
- □ 분리된 멍게 가식부(육질) 내부 내장 분리 제거 및 세척장치 설계 및 제작
 - 멍게 가식부(육질) 분리 및 내장 처리 line은 한 개의 통합 line으로 설계·제작
 - 멍게 가식부(육질) 내장 제거 장치 설계·제작
 - 멍게 가식부(육질) 세척 살균장치 설계·제작(살균 냉각수 활용)
- □ 멍게 가식부(육질) 포장 장치 설계 및 제작
 - 멍게 가식부(육질) 250g~5kg 대량 포장 장치 설계·제작

[※] 연구개발기관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(5차) 성과 목표·지표 설정 안내서」에 따라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 지표를 60%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

- □ 리빙랩 운영 및 현장 실증
 - ㅇ 양식 현장에서 요구하는 장비개발 방향 의견 수렴을 위해 리빙랩 운영
 - o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등 수협 및 생산단체와 연계하여 개발 장비의 현장 적용을 통한 적합성 검증 및 개선 추진

5) 기타 조건

- □ 본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 및 알고리즘과 소스코드 등 모든 연구 개발 결과물 일체는 국가적 활용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제공하여야 하며,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
- □ 본 연구개발 과제는 현장 보급을 위해 연구기관(기술 문제해결), 기업(기술 완성, 제품 제작), 수요처(수협 및 생산단체)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해야 함
- □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1조(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) 및 제13조(해양수산과학 기술정보의 수립·관리등)에 따라 본 연구에서 구축된 연구 인프라 및 연구데이터는 공동 활용을 원칙으로 함
 - o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3조(해양수산과학기술정보의 수립·관리등)에 따라 연구 개발 과정에서 연구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서(DMP, Data Management Plan)를 제출(해양수산R&D지식정보시스템(바다봄), https://badabom.go.kr) 하여야함
 - * 연구데이터를 생성하는 연구개발기관(주관/공동)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제출 필요
- □ (리빙랩 운영) 연구 초기단계부터 보급단계(실증/효과검증)까지 다양한 수요자가 의견을 반영하여 시제품을 제안-점검-체험-적용-개선-검증할 수 있는 리빙랩 (Living Lab) 운영방안 제시 필요

□ 연도별 예산(안)

| |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(단위: 백만원) | 1년차 | 2년차 | 3년차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_ | 1,200 | 200 | 580 | 420 |

[※] 연구개발기간,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,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[붙임 3] 별첨(붙임 4, 5) 자료 목록

| 구분 | | 항목 | 비고 |
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붙임4 | 서식1 | 연구개발계획서 (서식1-2의 별첨자료는 해당시 작성) | 필수 |
| | 서식2 |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| 필수 |
| | 서식3 |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| 필수 |
| | 서식4 | 과제제안요구서(RFP)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| 필수 |
| | 서식5 |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| 필수 |
| | 서식6 |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(증빙서류 포함) | 해당시 |
| | 서식7 | 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 | 필수 |
| 붙임5 | 참고1 |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사용자 매뉴얼 | 신청과제 인터넷 입력시 참고 |
| | 참고2 |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 | 과제 신청시 참고 |
| | 참고3 |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도 참고자료 | 과제 신청시 참고 |